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2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래융합대학), 02-970-9781

제정 2017. 12. 8. 전부개정 2020. 2. 24. 일부개정 2020. 6. 18. 일부개정 2021. 3. 17. 학칙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2. 2. 14. 전부개정 2022. 12. 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0조제1항 및 제4항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36조에 따라 미래융합대학의 학사 관리,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학사관리, 조직 등에 관하여 법령 및 학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학기

제1절 학기 운영

- 제3조(학년도·학기) 학년도와 학기는 학칙에 따르며 하계·동계방학 동안에 여름 및 겨울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집중학기제) ① 집중학기제는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이 서울과학기 술대학교 내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직전학기(여름ㆍ겨울학기 제외)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③ 집중학기제는 1학기, 2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여름·겨울학기 제외), 재학 중 2회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 ④ 집중학기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집중학기제 신청서를 수강신청 시작 일주일 전까지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 ⑤ 집중학기제를 신청한 학기 및 학년도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매 학기 최대 수강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③ 전과,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이수한 학점에 따라 인정받은 학년(학기)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④ 전과,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수한 학점에 따라 인정받은 학년(학기)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여름・겨울학기

- 제6조(여름·겨울학기 개설) ①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 여름·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되, 1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실험, 실습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여름·겨울학기 수강) ① 여름·겨울학기에 학과에서 개설 요청한 교과목 외에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상시 개설할 수 있다.
- ② 여름 · 겨울학기의 최대 수강학점은 6학점으로 하되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기 및 학년별 최대 수강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여름·겨울학기 학점 인정) 졸업 직전 여름 또는 겨울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

제3장 수업 제1절 수업 운영기준

제9조(정의)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면수업: 교내·외 강의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 2. 원격수업: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
- 3. 원격수업 교과목: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100%가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 4. 실시간 화상강의: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원격수업
- 5. 온라인 동영상 수업: 사전 제작된 영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원 격수업
- 6. TBL(Triple Blended Learning) 수업: 대면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동 영상 수업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수업
- ② 제1항제2호의 원격수업은 제4호와 제5호만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말하며, 원격수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제6호는 원격수업으로 보지 않는다.
- 제10조(원격수업 기준 적용범위) ① 학생의 소속대학에서 수강하는 원격수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점 교류, 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에도 적용한다.
- ②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교양교과, 전공교과, 일반 선택교과 모두 해당한다. 단, 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상 원격수업 운영이 어려운 강좌는 원격수업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원격수업 교과목 개설기준) ① 전공교과목은 학기당 학과별 전공교과목 수의 2분의 1 한도에서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합·폐강 또는 재난

- 발생 등 대면수업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 한도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
- ② 교양 교과목과 여름·겨울학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각 학과별로 개설된 총 원격수업 교과목 산정 시 제외한다.
- 제12조(원격수업 등 운영) ① 미래융합대학은 재학생의 일·학습 병행을 위해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강의를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 제를 기본으로 하며,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어야 한다.
- ④ TBL 교과목은 대면수업 4주 이상, 온라인 동영상 수업 6주 이하로 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 등 대면수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원격수업 이수가능학점) ①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130학점 중 65학점으로 제한하며, 3학년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65학점 중 33학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으로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기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이수학점은 원격수업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제1항의 졸업학점 중 원격수업 수강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 학기 6학점,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 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14조(원격수업 출석관리) ① 미래융합대학 온라인수업은 1주차 당 수강기간을 1주일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교과목 운영상 그 기간을 담당교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학습자는 제1항에서 지정한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

수강 시 결석(0% 수강) 또는 지각(0% 초과 100% 미만 수강) 처리한다.

- ③ 출석관리 기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46조에서 정한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험 및 강의 평가) 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의 성적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발생 등 대면 시험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하여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 제16조(원격수업 운영위원회) ① 미래융합대학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 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워격수업 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2. 워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워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4. 원격수업 관련 대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학생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창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콘텐츠 관리)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콘텐츠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 담당 교수가 절차에 따라 재사용 심의를 신청하고 원격수업 운영위원회에서 콘텐츠 재사용 여부에 대한 평가 후 승인할수 있다.
- 제18조(저작권) ①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안·강의 보충교재 제작 시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등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미래융합대학에서 교안개발비 등을 지원받아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 적재산권은 본교 소유로 한다.
-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원격수업 운영기준 외의 사항은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학칙, 학사관리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시 행세칙」을 따른다.

제3절 강의보조 전담인력 운영

- 제20조(정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신분으로서 미래융합대학의 수업, 실습 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강의보조전담직원(TA)이라 한다.
- 제21조(직무) 강의보조전담직원(TA)은 월84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미래융합대학 강의 운영 업무를 한다.
- 1. 교원의 강의 및 학생지도 활동 보조
- 2. 수업진행 및 강의 보조, 화상강의 진행 보조, 실습지원
- 3. 교육지원시스템(LMS) 관리(온라인동영상강의자료 업로드, 게시판 질의응답, 출석관리, 성적관리 등)
- 제22조(자격) 강의보조전담직원(TA)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생 중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학부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23조(우영사항) 강의보조전담직원(TA) 우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등 제1절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

- 제24조(교육과정의 운영 및 편성) ① 교육과정은 전공교과, 교양교과 및 일반선 택교과로 구분한다.
- ② 전공교과는 학과에서 학문적 능력과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로 편성한다.
- ③ 교양교과는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기초교과와 전공교과 이수에 필요한 학문기초 교과로 편성한다.
- ④ 일반선택교과는 전공교과, 교양교과 이외의 교과로 한다.
- ⑤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은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제25조(교과교육 특별지도) ① 학사경고 기준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이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별도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6조(교육과정 공유) 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다른 단과대학에서 개설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교육과정 공유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학업이수능력평가) ① 신입생의 학업능력을 파악하고, 학업 수행에 필수적 인 기초역량 함양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학업이수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업이수능력평가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일 전에 실시한다.

- ③ 대학은 과목별 점수가 기준 미달인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서 지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학업이수능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

- 제28조(목적) 학칙 제57조에 의거 미래융합대학에서의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 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9조(학점인정 대상자)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대상자는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또는 미래융합대학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을 신청 한 자에 한한다.
- 제30조(학점인정 범위) ①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은 입학 후의 학습에 한하며,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은 6학점(2개 교과) 이내로 하고 이는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 ② 입학 후 선행경험학습은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졸업 시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재직 중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며, 1학기(15주) 이상의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과제에 한한다.
- 제31조(선행경험학습 교과목 명칭) 선행경험학습의 교과목 명칭은 '실무 프로 젝트1' 및 '실무 프로젝트2'로 한다.
- 제32조(학점인정의 절차)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은 「계획서 제출 승인 중 간보고서 제출 - 학기말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 제33조(학점인정의 신청·승인) ① 선행경험학습의 학점 신청은 다른 교과목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수강신청과 동시에 선행경험학습의 학점 인정 계획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획서를 담당 교수가 검토 후 승인하면 해당 교과목으로 선행경 험학습의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하다.

- ③ 수강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진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등록규으로 부과한다.
- 제34조(학점인정의 평가 및 학점인정) ① 학과장은 담당 교수가 평가한 학생의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을 위한 관련 신청 서류(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 계획 서,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 중간보고서,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 최종보고 서 및 실적 증빙 서류)를 토대로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여부 의견을 미래융합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융합대학장은 학점 인정을 위하여 학장을 위원장으로 학점인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선행경험학습의 학점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 ③ 평가방법은 "S(합격)" 나 "U(불합격)" 로 평가한다.

제5장 전과 · 수료 · 졸업 · 휴학

- 제35조(전과) ① 전과는 미래융합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한하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전과는 3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2학년부터 할 수 있으며, 전과 신청 대상 학과에서 정한 전과 심의 기준에 따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과,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의 전과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관리 규정을 따른다.
- 제36조(휴학) ①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2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49조에 따른다.
- ② 다만, 학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휴학 횟수(학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7조(학년수료학점) ① 학칙 제64조에 따라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1학년 수료: 33학점 이상

- 2. 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 3. 3학년 수료: 98학점 이상(편입생 33학점 이상)
- 4. 4학년 수료: 130학점 이상(편입생 65학점 이상)
- ② 해당 학년까지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 제38조(졸업요건 및 심사기준 등)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 및 교양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공 이수학점: 60학점(편입생은 30학점) 이상
- 2. 교양 이수학점: 40학점(편입생은 20학점) 이상
- ②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미래융합대학 내에서 개설한 일반선택교과
- 의 이수학점은 제1항제2호의 교양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편입학생이 저학년(1, 2학년)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졸업심사는 신입생 기준 130학점(3학년 편입생은 65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 1. 전공 및 교양 이수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 2.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과목 이수 여부
- 3. 재학연한 초과 여부
- 4. 학과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
- 5.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 ⑤ 학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졸업자격인증은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장학 · 상벌 등

제39조(장학금) ① 장학금 수혜기간은 1개 학기로 하되, 매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여름·겨울학기는 대학회계 재원으로 학생처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비로 지급하는 미래융합대학 자체 장학금은 사업비 사정에 따라 장학금 종류와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미래육합대학 장학금 지급계획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④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장학생 선정 및 지급기준 등은 학칙 및 장학 금 규정 등을 따른다.
- 제40조(상벌) 학생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상벌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1조(등록금)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정한다.

제7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LiFE사업단

- 제42조(조직) ① 미래융합대학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및 수행을 위해 LiFE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업단에 LiFE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 이라 한다.)을 둔다.
- ③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3조(구성)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단 내 부단장 및 직원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전담인력의 계약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인사 규정」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44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제도개선
 - 2.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관리
 - 3. 사업 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연차 평가 수행

- 4. 사업 관련 통계자료 관리
- 5.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 6.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성과홍보
- 7. 사업 관련 협의회 업무
- 8. 미래융합대학 내 사업 실적 관리
- 9. 사업비 회계 관리 및 운영
-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5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다.
- 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업단장, 미래융합대학장, 교무 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사무국장, 연구처장, 도서관장, 공동실험실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 및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인 이 내로 구성한다.
- ③ 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수행기간으로 한다.
- ⑤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 2. 사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3.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사업 실적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⑥ 사업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사업추진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실무운영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6조(실무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3항 및 제7항에 의거 사업추진위원회의 위 임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부단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과 사업 참여 학과장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및 직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수행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대학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비 집행지침 및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 5. 사업 중간 및 최종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적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과대학장, 에너지바이오대학장, 조형대학장, 인문사회대학장, 기술경영융합대학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본 사업의 연계성과 이해도가 높은 관련 보직교수와 총장 및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수행기간으로 한다.
-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 2. 사업 컨설팅 및 추진 현황 모니터링
- 3. 성과지표 달성 여부 점검 등 자체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
- 4. 우수성과 확산 계획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8조(운영지침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 ②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성인학습자지원센터

- 제49조(조직) ①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이하 "성인학습자"라 한다.) 친화적 교무
 - · 학사 운영 지원 조직으로 성인학습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에는 성인학습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③ 센터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겸임하거나 미래융합대학 교원 중에서 미래융합대학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조(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성인학습자 친화적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전담인력의 계약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51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지원
 - 3.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성인학습자 상담 및 학습역량 강화교육 지원
 - 5. 성인학습자 학습이력 관리 및 경력 개발 지원
 - 6. 성인학습자 프로그램 관련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성인학습자 지원 및 상담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52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융합대학장, 사회교육개발원장, 교육혁신부처장, 미래융합대학 학과장, 그 밖의 위원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미래융합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하다.
- 1. 성인 친화적 교육화경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2.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53조(시설이용) 학생 친화적 학사운영을 위해 학생들에게 학생 상담실, 자치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725호, 2022.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2023학년도 학부제 폐지에 따른 특례) ① 2023학년도에 폐지되는 학부제소속 휴학생은 2023년도 1월까지 임의로 전공을 배정한다.
- ② 제1항의 임의로 전공배정한 휴학생의 전과는 제한 횟수인 1회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 ③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미래융합대학 학부에 개설한 전공교과(이하 "공통전공교과"라 한다.)도 소속 학과의 전공교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2022학년도 입학 신·편입생의 졸업을 위한 전공 이수학점 중 30학점(편입생은 15학점)을 초과하는 공통전공교과 이수학점은 일반선택교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여름·겨울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의 졸업학점 인정 경과조치) 제8 조는 2023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자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겨울학기 또는 2023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자의 경우 졸업사정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료 또는 졸업학적으로 인정한다.